

<b>무선국 관리 책임자 명부</b> (중계기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무선국 명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중계기국 (인터넷 접속 유.무선 중계기국 포함)	전파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아마추어무선국
사용 주파수	무선국관리규정에 의한 주파수 범위	KARL BAND-PLANE 준수
무선국 출력	25.0W 이내	무선국관리규정에 의한 중계국 출력
시 설 자 (신청인)	사단법인 아마추어무선연맹 이사장 (전파법 시행령 제27조 규정)	의무적 총 책임자
의무적 관리자 (책임자)	각 지역의 본부장	호출부호: 성명:
운영 관리자	지역 본부의 중계기위원	호출부호: 성명:
시설 관리자	각 지역의 본부 사무국장 혹은 (본부장이 임명한 중계기 관리자)	호출부호: 성명:
기 타		
부관사항	① 아마추어무선 중계(유.무선 접속 무선국 포함)무선국은 전파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맹에서만 중계기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중계기의 원만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시 무선국(인터넷 포함) 관리자를 임명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계기 설치 및 운용 서약서”를 준수하는 조건일 것.	

## 중계기 설치 및 운용 서약서

1. 중계기의 설치는 전파법에 합당하여야 하며 연맹 무선국관리규정의 조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함으로 중계기의 모든 제반 설비는 전파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맹에 무상 증여 또는 기부 체납으로 한다.
2. 허가 설치될 중계기의 허가 신청수수료와 행정 업무는 연맹이 부담하고, 유지 보수 등 중계기에 관계되는 기타 모든 경비는 해당 지역본부의 지부 및 단체가 부담한다.(근거 : 무선국관리규정 제6장)
3. 중계기가 허가된 지역 본부의 지부장은 취임 시 중계기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이 서약서를 연맹에 제출한다.
4. 중계기 설치 후 1년 동안 한시적 운용 후 문제가 없을 시 계속 운용하는 것으로 하되 추후 운용상 문제 발생 시 중계기위원회로 보고하고 연맹의 지시에 따른다.
5. 매년 2회 무선국관리규정에 의거 중계기 운용 실태를 상세히 연맹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계기 관리가 정상적이지 못할 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연맹에서 직접관리하거나 이전설치를 수용하는 조건일 것.
6. 위 내용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           |
|--------------------|-----|-----------|
| ① 설치본부 및 본부장 :     | 본부장 | (서명 또는 인) |
| ② 설치신청 지역의 지부장 :   | 지부장 | (서명 또는 인) |
| ③ 대표자(지부장)의 호출부호 : |     |           |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⑤ 지부의 주소 :         |     |           |
| ⑥ 지부장 휴대전화 :       |     |           |

\* 중계기설치지부 지부장의 변동이 있을 시 즉시 본부로 본 서식을 작성 보고 한다.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이사장 귀하**

##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등록기준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무선국의 목적		무선국 종별		
통신사항		무선국 수		
통신상대방		이동범위		
기기 명세	기기의 명칭 (모델명)	적합성평가 번호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폭·주파수, 안 테나공급전력	기기일련번호 (아마추어국은 적지 않 습니다)
안테나계 (휴대가 가능한 무선기 기의 경우에만 적 습니다)	형식	구성 (아마추어국은 적지 않습니다)		이득 (아마추어국은 적지 않 습니다)
		편파	길이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				
자격 종별 (아마추어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기 타				

「전파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 당 수수료
------	------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